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18인"을 "9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부지사" 를 "행정부지사"로 하며.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도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 총위원수의⅓이내로 한다. 동조 제4항중 "주무계장"을 "주무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사업 투자심사등의 안건이 부의되었을 때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 --- 9인 ----------
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② --- 행정부지사 ------- --- 기획조정실장 -----
③위원은 관련실국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도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 총위원수의 ⅓ 이내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④ ---------- -- 주무과장(담당관)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사항 2.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삭제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주요사업투자심사등의 안건이 부의되었을 때 개최한다.